



# 직업교육 혁신지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사업 업무협약서

- 사업명 : 직업교육 혁신지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사업
- 사업비 : 금이억팔천오백만원 (금285,000,000원)
- 협약기간 : 2023. 8. 4. ~ 2024. 2. 29.
- 협약당사자 : “갑” 광주광역시교육청 “을”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온라인 정보공유 및 성과관리 환경을 구축하는 시스템(정보공유시스템 및 사업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직업교육 혁신지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교육부 「2023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공모 계획(직업교육정책과-4889, 2022. 12. 26.)」 및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추진계획 승인(중등직업교육정책과-1016, 2023. 3. 15.)」 과 관련하여, 「2023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추진계획」에 따라, “갑”이 「직업교육 혁신지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사업」을 “을”에게 위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 목표 및 수행)** “을”이 추진해야 할 사업 목표 및 수행내용은 [별첨]의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비는 일금이천팔백오십만원(₩28,500,000원)으로, 시·도교육청별 자체 예산(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대응투자금)으로 각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시·도교육청별 교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경북	경남	계
금액	28.5	28.5	28.5	28.5	28.5	28.5	28.5	85.5	285

#### 제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① “을”은 “갑”이 지급한 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계정 내에서 구분하여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다.
- ②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와 은행예치 이자 발생금(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해당 사업의 수행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의 경우 “갑”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반납한다.
- ③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갑”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사업비의 지출실적을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⑤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단,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의 수행)

- ① “을”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추진 수정계획」 및 「2023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추진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 ③ “을”은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사업 추진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이행 감독)** “갑”은 “을”의 협약업무 수행과정이나 협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7조(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 ①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나) “을”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을”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갑”이 추구하는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제8조(기밀의 유지)**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지득한 제반사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 **제9조(신의성실 및 상호 협조)**

① (신의성실) “갑”과 “을”은 본 협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관계 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사업을 수행 있어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상호 협조) “갑”과 “을”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제10조(협약서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해석 및 분쟁)**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협약서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8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발명진흥회**

**교육감 이정선**

**상근부회장 손용욱**

